

의안번호	2220468
의 퇴 인	조지연 의원
회 답 일	2026.10.08.
추 계 번호	26A3968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의3(자연재난 시 전기요금의 감면 등)	○ 전기판매사업자는 「기상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중 폭염경보(폭염중대경보를 포함한다) 또는 한파경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발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음(제1항) 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-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-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- 4.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- 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- 6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같은 조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상점가에서 사업을 하는 자 - 7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「축산법」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축사에서 가축사육업을 영위하는 자 - 8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기요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- 9. 그 밖에 재난 대응 및 공익상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	재량규정
		○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7조의3(자연재난 시 전기요금의 감면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「기상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중 폭염정보(폭염중대경보를 포함함. 이하 같음) 또는 한파경보가 일정 기간 이상 발효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의 적용을 면제하고, 국가가 이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개정안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폭염정보 또는 한파경보가 발효된 경우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요금 적용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음(안 제17조의3제1항)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 -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 -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 - 4.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
 - 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 - 6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같은 조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상점가에서 사업을 하는 자
 - 7. 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「축산법」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축사에서 가축사육업을 영위하는 자
 - 8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기요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9. 그 밖에 재난 대응 및 공익상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폭염·한파 등 자연재난 발생 여부 및 빈도, 전기요금 감면 등의 대상 및 감면 기준, 국가의 재정지원 수준 등을 파악하여야 하는데,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첫째,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“폭염경보 또는 한파경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발효된 경우”에 전기요금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현 시점에 폭염·한파 등 자연재난의 발생 유형·빈도 및 기간 등을 특정하기 어려움
- 둘째, 개정안에서 전기요금 감면 등의 대상 중 일부¹⁾와 전기요금의 감면 기준, 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예측하기 곤란함
- 셋째, 개정안은 전기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원 수준이 유동적이므로 추계에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현황을 보면, 2026년 6월 기준으로 할인금액은 총 3,531억원 규모임
 - 다만,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의 수혜 대상과 개정안의 자연재난 관련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일치하지 않음

1) 안 제17조의3(자연재난 시 전기요금의 감면 등) ①전기판매사업자는 「기상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중 폭염경보(폭염중대경보를 포함한다) 또는 한파경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발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.

9. 그 밖에 재난 대응 및 공익상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[표 1]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현황

(단위: 억원)

할인 대상	적용 종별	할인율·한도 ¹⁾	할인금액 ²⁾					
			2021	2022	2023	2024	2025	2026.6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	주택용, 일반용 (생계·의료급여)	월 1만6천원 한도 (여름철 2만원)	1,604	2,067	2,115	2,224	2,489	1,260
	주택용, 일반용 (주거·교육급여)	월 1만원 한도 (여름철 1만2천원)						
	심야전력	심야(갑) 31.4%, 심야(을) 20%						
차상위계층	주택용, 일반용	월 8천원 한도 (여름철 1만원)	201	239	200	185	176	83
	심야전력	심야(갑) 29.7%, 심야(을) 18%						
국가유공자 518만주유공자	주택용, 일반용	월 1만6천원 한도 (여름철 2만원)	14	16	13	12	12	5
독립유공자			12	15	13	13	14	6
장애인(1~3급)	주택용, 일반용	월 1만6천원 한도 (여름철 2만원)	1,224	1,437	1,256	1,218	1,216	570
사회복지시설	주택용, 일반용	30%	842	946	1,188	1,240	1,276	666
	심야전력	심야(갑) 31.4%, 심야(을) 20%						
3자녀 이상	주 택 용	30% (월 16,000원 한도)	849	915	847	810	800	375
대가족(가구원수 5인 이상)	주 택 용		321	328	297	276	266	122
출산가구(3년 미만 영아)	주 택 용		741	804	794	784	834	416
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	주 택 용	30%	27	33	47	53	58	28
총계			5,835	6,800	6,770	6,815	7,141	3,531

주 1. 16. 12월 할인율·한도 개정 후 변동 없음

주 2. 적용 가능한 복지할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할인 금액이 큰 항목을 적용

자료: 한국전력공사
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노종우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노종우	02-6788-4675	namsan@assembly.go.kr